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782호 2010. 9. 13.(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46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9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97호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사항 공고 ----- 1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01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 1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01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 43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 - 46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고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8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 확정된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9. 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전 년 성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서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내용(총괄)

(단위 : 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현액		439,463,195,920	415,642,818,990	23,820,376,930
결산액	세 입	441,757,420,044	417,375,671,315	24,381,748,729
	세 출	372,796,897,598	354,472,092,569	18,324,805,029
잉여금	계	68,960,522,446	62,903,578,746	6,056,943,700
	명시이월	9,625,418,360	9,625,418,360	
	사고이월	10,711,353,517	10,711,353,517	
	계속비이월	8,469,015,190	5,597,500,050	2,871,515,140
	보조금사용잔액	4,933,607,253	4,691,021,602	242,585,651
	순세계잉여금	35,221,128,126	32,278,285,217	2,942,842,909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 99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9.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최근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친서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 세무조사 서식을 현행 법률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 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면제(안 제12조의3제1항제3호 신설)
- 지방세법 개정(법률제9924호, 2010.1.1시행)에 의한 변경된 세목명으로 세무조사 서식(별지 제5호)을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27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번지), FAX : 560-4947】 에게 제출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별지 제5호 서식(수정안) 1부. 끝.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보고서 내용

1. 재정상태보고서(요약)

(단위 : 원)

과 목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 금	내부거래	계
자산 총계	1,276,299,332,882	88,699,154,574	15,734,994,260	-	1,380,733,481,716
부채 총계	51,781,768,083	242,585,651	-	-	52,024,353,734
순자산 총계	1,224,517,564,799	88,456,568,923	15,734,994,260	-	1,328,709,127,982

2. 재정운영보고서(요약)

(단위 : 원)

과 목	일반회계	기 타 특별회계	기 금	내부거래	계
수익 총계	316,915,709,311	18,486,228,758	4,397,185,177	(8,412,077,069)	331,387,046,177
비용 총계	284,660,839,155	7,887,344,063	411,973,627	(8,412,077,069)	284,548,079,776
운영차액	32,254,870,156	10,598,884,695	3,985,211,550	-	46,838,966,401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취득가액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면제기간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새로이 3년 동안 적용한다.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법인유형	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제 조 업 ()	
○ 법인소재지 :	건 설 업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판 매 업 ()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운 송 업 ()	
○ 제 출 일 자 : 년 월 일	기 타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297mm×210mm)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서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 [조사대상기간이 2년이면 사업년도별(2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인천광역시 서구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삼곡동 244)
 인천광역시 서구청 세무과 (취득세팀)
 우편번호 : 404-701

※ 문의사항 전화 : (032) 560-4210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사본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대
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 및 보조장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각 사업년도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될 날인

서식목차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3.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명세서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176조의11(납세지등) 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① **소득세 납부액**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의한 법인세는 주민세 특별
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 시 기재

② **산출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176조의12 세율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인천광역시 서구 동 번지 호						사업장명		
구분 월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 액	납부일자
	근 로	퇴 직	배 당	이 자	사 업	법인세법 제98조	기 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297mm×210mm)

※ 서적 2. 주민세 V 재산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o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부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연면적 (a)	①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c(a-b)	②정당 세액 (d)	기납부 세 액 ① (e)	납부 일자	차인세액 f(d-e)
				기숙사	구내식당	기타	소 계 (b)					

(297mm²×210mm²)

※ 서식 3.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명세서(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미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용의 경우 월 연 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는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서 산정

④ 산출세액 : ③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㉔)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97호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상 호 (대표자)	신규등록업종	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연월일
영환종합설비 (윤달호)	난방시공업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인천서구2010-27-05 인천서구2010-25-02	인천 서구 가좌동 361-4	2010.09.06

끝.

2010년 9월 0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 - 101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31호(2010.07.02)】** (이하 “감리자지정기준” 이라 한다)에 의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9.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10. 09. 08(수) ~ 2010. 09. 14(화)

2. 감리자 지정 접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0. 09. 15(수) (09:30~11:30)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본관3층 소회의실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 ※ 직접 접수분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고, **접수시간 절대 엄수할 것.**
 - ※ 위임받은 자가 접수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철하여 제출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접수대장에 기재사항을 기재 후 감리회사의 인감(사용인감)을 날인 하여야 함

3. 예정가격 추첨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0. 09. 15(수) 14:30부터 추첨 진행함.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지하1층 식당
 - ※ 예정가격 추첨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0” 으로 처리하며, 개찰중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 ※ 접수자와 동일인이 추첨참가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나 접수자와 다른 사람이 참석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 예정가격 추첨참가자는 입찰참가자 기재 후 감리회사의 인감(사용인감)을 날인 하여야 함
-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중 당일 입찰참가자가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예정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하며 예정가격 추첨후 참여결과에 따라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사실확인 서류제출 요망.

4.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일 시 : 2010. 09. 16(목) ~ 09. 20(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5.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0. 09. 16(목) ~ 2010. 09. 20(월). (근무시간 내만 가능)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 열람방법 : 직접방문 열람(대표자 또는 대리권이 있는 자에 한하며, 유선열람 및 문의 등은 일체 받지 않음)

○ 내 용 :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별지1호서식]
나. 자기평가표 [별지2호서식]
다.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은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 이의신청 :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에 한함.
(이의신청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경력 중 ▽▽현장 근무 기간이 어떤 사유로 결격이다”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위 기간 이후에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려 처리합니다.

6.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31호)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31호) 제4조 제2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각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다. 심사기준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은 당해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 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라. 지역가점 : **500세대 미만**은 감리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가산점 부여.
(본 공고는 412세대로 해당)

마.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함**.

7.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입찰서개봉 및 발표 ⇒ 예정가격 추첨 ⇒ 예정
가격 평균가 발표 ⇒ 순위(예비1~5순위)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상위 5위 업체 추가서류
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결격여부 등 조회) ⇒ 감리자지정 통보

※ 예비 1~5순위 선정은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함

나. 감리자 지정 방법

- 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31(2010.07.02.)호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② 상기 “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
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
른다.
- ③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
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 ④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⑤ 만약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는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8. 사업내용

◆ 사업명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지구 15블록 9-18,20로트 ○○아파트 신축공사

응모번호 제 2010 - 1호

<p>가. 사업주체 : (주)하나다올신탭 대표 이병철 (☎ 02-3287-4679)</p> <p>나. 설계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태성 대표 이봉희 (☎032-891-8111)</p> <p>다. 시공자 : 현대건설(주) 대표 김중경 (☎ 02-746-3821)</p> <p>라.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15블록 9-18,20로트 ○ 대지면적 : 23,976㎡ ○ 연면적 : 67,098.4027㎡ ○ 규모 : 지하2층, 지상15층, 공동주택 6개동, 부대복리시설 ○ 세대수 : 412세대 ○ 공사기간 : 2010.10.16 ~ 2012.12.15(26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10.09.02 ○ 착공예정일 : 2010.10. <p>마. 사업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 154,035,376천원 ○ 대지비 : 67,132,180천원 ○ 총공사비 : 68,981,169천원(타법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리대상 제외 공사비 : -천원 2. 감리대상 건축 공사비 : 55,005,750천원 ○ 전기공사비 : 6,113,940천원 ○ 소방공사비 : 5,229,203천원 ○ 정보통신공사비 : 2,632,276천원 	<p>바. 복수예비가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공사비 : 55,005,750,000원 ○ 감리예가기준 : 1,311,337,080원 (건축공사비의 2.384% 적용) (부가가치세 미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232,655,768원 ② 1,237,903,312원 ③ 1,243,146,634원 ④ 1,248,393,789원 ⑤ 1,253,635,769원 ⑥ 1,258,885,766원 ⑦ 1,264,125,456원 ⑧ 1,269,372,689원 ⑨ 1,274,611,348원 ⑩ 1,279,867,891원 ⑪ 1,285,112,135원 ⑫ 1,290,354,698원 ⑬ 1,295,607,982원 ⑭ 1,300,862,835원 ⑮ 1,306,090,946원
--	--

9. 공정계획서

◆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

(예정공정표에 의거하여 감리원 배치기간 표기할 것)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배치기간
전체공정																													2010.10.16 ~ 2012.12.15
건축공사																													2010.10.16 ~ 2012.12.15
토목공사																													2011.02.01 ~ 2012.12.15
설비공사																													2011.04.01 ~ 2012.12.15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유동비율 : **172.46%**

나. 평균자기자본비율 : **49.52%**

※ 구비서류 중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합니다.(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금액합계에 대한 실적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평가 및 비평가대상 감리원 명단 기입)
-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 (3)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3호서식]
 - 밀봉후 표지에 인감 날인하고 “감리비입찰서 및 감리회사명 등을” 명기 할 것
- (4) 감리원 배치계획서
- (5) 증빙자료 :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감리전문회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최근 1년간 말소사항 포함),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 위임받은 자가 접수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철하여 제출할 것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1) 재무상태 건실도 : 재무상태검토보고서(본 공고상의 별지 제4호 서식)

- 유의사항(재무검토 보고서 작성시)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2)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3)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 및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 **미제출 시 입찰 선정 제외하고 실격처리 함**

(4)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해당자)

(5) 업무중첩도 관련 :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 (해당하는 경우)

(6) 확인서 :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

(7) 교체빈도 : 최근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 사업에서의 감리원 교체율 및 교체건수

(8)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본 공고상의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9)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10)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

1)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2)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3)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4)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5)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2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11) 본 공고문 붙임의 **분야별 평가방법 및 [별첨 2], [별첨 3], [별첨 4]**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 토목, 기타설비),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평가대상 감리원에 대하여도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빈도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 감리원(추가로 참여하는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처리 함.**

※ 제출서류는 상기 순번에 따라 상철하고 중앙 상단에 7cm 간격으로 편칭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모서류 중 제출기한 내 제출서류를 1건이라도 미 제출할 경우 실격처리 함.**
(해당사항에 한함)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표, 참여감리원(비평가, 신규 포함)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 발행 본 복사)을 열람용으로 복사하여 별도 제출 요망(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요)

다. 유의사항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여 제출된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감리전문회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3) 상기 “가 및 나” 항 접수 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됨

(4) 상기 “가 및 나” 항 접수 시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 실격
- 본 공고문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 “실격”

(5)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한다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공고기준으로 1개사가 2건 이상 응모한 경우 및 같은 응모번호에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③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과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도 포함) 및 **입찰 금액이 아라비아숫자 금액과 한글표기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 ④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⑤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입찰일 이후 감리자로 지정된 자를 제외한 감리자지정신청자의 응모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에 의하여 2일간 반환(이후 폐기)하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 응모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정으로 평가합니다.

- ①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참여감리원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②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
 - ㉠ 3인 이하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
 - ㉡ 3인 이상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고, 4번째부터는 감리분야(건축, 토목, 기타설비) 구분없이 배치 가능함
 - ㉢ 비평가 대상 감리원은 해당분야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며, 다만 1명만 부분 배치 가능함
- ③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 기간동안(신규비상주감리원은 건축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보조감리원(상기 ②참조)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함.
- ④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감리사보의 임금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사.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 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

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 합니다.

아.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 ①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이 곤란한 경우 감리지정신청자에게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 ②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함), 감리용역 업무가 감리기간이나 금액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여(용역수행중인 실적포함) 감리자지정권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당해 허가권자의 확인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 사본 등은 일체 감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행실적(금액 및 감리업무 수행실적 등)이 누락 또는 과대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 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 전체가 완료 되기전(준공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 등을 첨부 하여야 하며,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차.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카.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 토목, 설비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공정 해당여부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파. 응모서류는 감리원배치계획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가는 개찰결과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 하.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431호 (2010.07.02)]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 거. 비상주 감리원의 경우 업무중첩도에서 당해 용역을 포함하여 6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처리 됨.
- 너.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불가)
- 더. 위 항목들에도 불구하고 [별첨 2] 감리자 감리업무수행실적, [별첨 3] 감리원 업무 수행실적, [별첨 4] 신규감리원의 배치에 대하여는 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시고, [별첨 2, 3, 4]양식에 따라 감리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만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며, 작성자의 실수로 [별첨 2, 3, 4]양식에 누락된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러.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 종료후 2일간 반환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 합니다. 또한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르며, 오타, 기재오류 등으로 공고 내용과 국토해양부 고시내용이 다른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합니다.
- 버. 관련규정 및 공고문에 이의가 있을 시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의문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032-560-4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각1부
 2.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각1부
 3. 제출서류 양식 1식

접수번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사업명 : 당하동 15블록 APT건립공사)

2010. 09. .

(회사명 기재)

(뒷 면)

사실확인 서류		
감 리 자 ~ 회 사 ~	①재무상태 건 실 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및 정보화 투자실적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
	⑦업 무 중 첩 도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도(배치예정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해당없음)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 리 원	⑫자 격 증 증 명 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 력 증 명 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 력 증 명 서	감리원(건축사보)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 인 서	최근 2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p>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감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p>※ 상기 구비서류중 한국건설감리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p>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가항목		접수기준	평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감리회사)	재정상태 건설도	유동비율	2			예) 00(%)	
		자본비율	2			예) 00(%)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12			예) 100(억원)	
	행정제재		14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2.5			예) 00(%)	
	신규감리원배치 교육훈련	교육훈련	0.5			예) 2주교육 0명, 1주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3			예) 건축 0명의 0명	
	교체빈도		9			예) 00(%)	
	감리업무수행계획서		3			예) 적정	
	가점	감리업무수행결과 가점		(1)			예) 00(점)
		지역가점		(1)			예) 00도(道),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50			
적격 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총괄 감리원	등급		6			예) 수석감리사	
	경력 및 실적		15			예) 00(년)	
	가점	자격가점		(0.2)			예) 건축사, 00기술사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21				
감 리 원	등급	건축		2		예) 수석감리사	
		토목		2		예) 감리사	
		기타설비		2		예) 감리사	
	경력 및 실적	건축		6		예) 00(년)	
		토목		6		예) 00(년)	
		기타설비		6			
	자격가점	건축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토목		(0.1)			
		기타설비		(0.1)			
	가점	행정제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토목		(-1)		
			기타설비		(-1)		
		교체빈도	건축		(-0.5)		예) 00(건)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4				
비상 주감 리원	등급		2			예) 수석감리사,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3			예) 00(년)	
	가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5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 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되며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0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감리원 배치계획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감 리 비 입 찰 서

입찰 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 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0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210mm x 97mm
(보존용지 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상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호	
구 분	감리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 영 비율(%)	산출근거(단위: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최근년도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p>※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p> <p>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0년 월 일</p> <p>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p>							

210mm x 297mm

(보존용지 2종 70g/㎡)

[별지 제8호 서식]

감리업무 수행결과 평가서

			평 가 일	
용역명		감리전문회사		사업주체
용역기간		대표자		시공사
감리비		연락처		공사기간
총괄감리원		업종		공사금액
총세대수			감리자 지정통보일	
사용검사일			감리계약체결일	

구분	평가 항목	평정	
		만족	불만족
감리자	1) 조직상태		
	2) 감리업무지원 시스템		
	3) 감리원 기술교육		
감리원 총괄감리원	4) 근무성실도		
	5) 기술능력		
	6) 감리원 통솔능력		
분야별감리원	7) 근무성실도		
	8) 기술능력		
	9) 검측 및 확인업무의 적정성		
비상주감리원	10) 근무성실도		
	11) 기술능력		

총평 : 만족(), 불만족()

○

○

※ 11개 항목중 7항목이상 만족인 경우 만족으로 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만족, 불만족 여부를 우선 기재한 후, 총평란에 전체적인 평가를 요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년 ○월 ○일부로 완료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감리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 및 평가자 : ○○사 대표이사
○○○ (인)

감리자지정권자 귀하

□ 분야별 평가방법(산출근거 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자 평점란에만 기재합니다)

가. 감리자(감리회사)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자 소계	50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50점 이내		
(1)재무상태 건 실 도	4			
산출근거		- 유동비율 평가(유동자산/유동부채 기재) (산출식 기재)		
		- 자본비율 평가(자기자본/총자산 기재) (산출식 기재)		
(2)감리업무 수행실적	12			
산출근거		역원 - 별첨2 참조		
(3)행정제재	14			
산출근거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산출근거		- 건설기술실적 :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교육훈련 : 가.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0.5 = 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0.3 =		
(5)신규감리원 배 치	3			
산출근거		별첨4 참조		
(6)교체빈도	9			
산출근거		※ 산출근거 자료제출		
(7)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산출근거		- 감리업무수행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8)가점 소계	(3)			
8-1.감리업무 수행결과 가산	(1)			
산출근거		- 만족비율 : 만족건수/전년도 전체평정건수 × 100 =		
8-2.지역가점	(1)			
산출근거				
8-3.설계용역 수행가산	(1)			
산출근거				
(9)적격여부	적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9-1.감 리 원 배치계획	적부			
산출근거				
9-2.업무중첩 도	적부			
산출근거				

나. 감리원

나-1. 총괄 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21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1점 이내		
(1) 등 급	6			
산출근거				
(2) 경력 및 실적	15			
산출근거		일(년) 별첨3 참조		
(3) 자격가점	(0.2)			
산출근거				
(4) 행정제재 감 점	(-2)			
산출근거				
(5) 교체빈도 감 점	(-1)			
산출근거				

나-2. 분야별 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24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분야별 감리원 각8점(24점) 이내		
(1) 등 급	6			
산출근거	2	- 건축 : 등급		
	2	- 토목 : 등급		
	2	- 기타설비 : 등급		
(2) 경력 및 실적	18			
산출근거	6	- 건축 : 일(년) 별첨3 참조		
	6	- 토목 : 일(년) 별첨3 참조		
	6	- 기타설비: 일(년) 별첨3 참조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3)자격가점	(0.1) × 3				
산출근거	(0.1)	- 건축 : 자격사항			
	(0.1)	- 토목 : 자격사항			
	(0.1)	- 기타설비 : 자격사항			
(4)행정제재 감 점	(-1) × 3				
산출근거	(-1)	건 축	업무정지기간 등 :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1)	토 목	업무정지기간 등 :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1)	기타설비	업무정지기간 등 :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5)교체빈도	(-0.5) × 3				
산출근거	(-0.5)	- 건축 :			
	(-0.5)	- 토목 :			
	(-0.5)	- 기타설비 :			

나-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나-3. 비상주 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5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5점 이내			
(1)등 급	2				
산출근거		등급 :			
(2)경력 및 실 적	3				
산출근거		일(년) 별첨3 참조			
(3)행정제재 감 점	(-1)				
산출근거		업무정지 등 기간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점)		
(4)교체빈도 감 점	(-1)				
산출근거		교체건수 : 상주(건) , 비상주 (건)			

나-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등급을 구분하여야 한다.

※ 비교 :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32(2010.07.02)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른다.

[별첨 2]

○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

※ 아래 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연번	용역수행				적용 요율(%)	환산금액
	용역명	감리기간	착공일	금액	공사종류 별 요율	
합 계						

[별첨 3]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 아래 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구분	경력사항		경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등급	평점
	사업명	기간					
총괄 감리원							
	소 계					일 년	
분야 별 감리원 (3명) 및 비 상 주 감리원 (1명)							
	소 계					일 년	

[별첨 4]

○ 신규감리원의 배치

※ 아래 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감리원 성명	분야	등급자격			신규감리원 자격		평점
		현재등급	자격명 (학력명)	취득일	해당시점 (감리사보)	해당시점 이후 경력및실적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구분	경력사항		경력 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비고
	사업명	기간				
신규 감리 원						
		소계				일 년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 101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1호(2009.03.23)】**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09.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10. 09. 08(수) ~ 2010. 09. 14(화)

2. 감리자 지정 접수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0. 09. 15(수) (09:30~11:30)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본관3층 소회의실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 ※ 직접 접수분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시간 엄수
 - ※ 위임받은 자가 접수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철하여 제출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접수대장에 기재사항을 기재 후 감리회사의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3. 예정가격 추첨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0. 09. 15(수). 16:00부터 예정. 건축추첨 후 전기추첨(건축은 14:30부터)
 - ※ 당일 사정에 따라 시간이 변경 될 수도 있음.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본관 지하1층 식당
 - ※ 예정가격추첨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하고 입찰가격을 “0”으로 처리하며, 개찰중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 ※ 접수자와 동일인이 추첨참가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나 접수자와 다른 사람이 참석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 예정가격 추첨참가자는 입찰참가자 기재 후 감리회사의 인감(사용인감)을 날인 하여야 함

-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중 당일 입찰참가자가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예정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하며 예정가격 추첨후 참여결과에 따라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사실확인 서류제출 요망.

4.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

- 기 간 : 2010.09.16(목) ~ 09.20(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5.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0.09.16(목) ~ 09.27(월) (근무시간 내만 가능)
-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인천광역시 서구 삼곡동 244번지)
- 열람방법 : 직접방문 열람(대표자 또는 대리권이 있는 자에 한하며, 유선열람 및 문의 등은 받지 않음)
- 내 용 :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 2서식]
나. 자기평가서[별지 제 7호서식]
다.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이외의 사항은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 이의신청 :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에 한함.
※ **이의신청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경력 중 ▽▽현장 근무 기간이 어떤 사유로 결격이다”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위 기간 이후에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려 처리합니다.

6. 사업내용

가. 사업명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지구 15블록 9-18,20로트 ○○아파트 신축공사

응모번호 제 2010 - 1 호

가. 사업주체 : (주)하나다올신탭 대표 이병철
(☎ 02-3287-4679)

나. 설계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태성
대표 이봉희 (☎032-891-8111)

다. 시공자 : 현대건설(주) 대표 김중경
(☎ 02-746-3821)

라. 사업개요

- 위치 :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15블록 9-18,20로트
- 대지면적 : 23,976㎡
- 연면적 : 67,098.4027㎡
- 규모 : 지하2층, 지상15층, 공동주택 6개동, 부대복리시설
- 세대수 : 412세대
- 공사기간 : 2010.10.16 ~ 2012.12.15(26개월)
- 전기공사기간 : 2011.04.01 ~ 2012.12.15(20.5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10.09.02
- 착공예정일 : 2010.10.

마. 사업비

- 총사업비 : 154,035,376천원
- 대지비 : 67,132,180천원
- 총공사비 : 68,981,169천원(타법 포함)
 1. 감리대상 제외 공사비 : -천원
 2. 감리대상 전기 공사비 : 6,113,940천원
- 건축공사비 : 55,005,750천원
- 소방공사비 : 5,229,203천원
- 정보통신공사비 : 2,632,276천원

바. 복수예비가격

○감리대가 : 실비정액가산방식
(부가가치세 포함)

감리예가기준: 351,069,251원

○산출범위 : 감리대가의97±3%

- ① 330,006,568원
- ② 331,408,367원
- ③ 332,815,985원
- ④ 334,217,561원
- ⑤ 335,623,123원
- ⑥ 337,027,362원
- ⑦ 338,434,193원
- ⑧ 339,831,482원
- ⑨ 341,232,895원
- ⑩ 342,645,783원
- ⑪ 344,045,178원
- ⑫ 345,456,938원
- ⑬ 346,854,247원
- ⑭ 348,262,113원
- ⑮ 349,663,892원

나.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 공정계획서(당하지구 15블록 9-18,20로트)
(예정공정표에 의거하여 감리원 배치기간 표기할 것)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배치기간
전체공정 (26개월)																													2010.10.16 - 2012.12.15
전기공사 (20.5개월)																													2011.04.01 - 2012.12.15

7.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실적분석” 자료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

가. 평균유동비율 : **147.14%**

나. 평균자기자본비율 : **43.54%**

※ 구비서류중 재무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합니다.(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금액합계에 대한 실적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는 최근 결산년도 기준으로 작성.

8. 응모자격 및 평가기준

가. 감리업자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

(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나. 감리원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 감리원배치기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
		평 가	비평가	
당하지구 15블록 9-18,20로트	1인	배치대상 아님	-	1인

※ 보조감리원 평가기준 : 2인 이상인 경우 2인만 평가함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의거 보조감리원의 배치대상이 아닌 경우(800세대 미만) 보조감리원 평가는 만점처리 함

○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증빙할 경우 제외 함)

9. 응 모 서 류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입찰시)

1) 감리업자선정 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2) 감리비입찰서- 신청서 제출시에 입찰서도 제출하되, 입찰서는 별도 이중봉투에 봉인 후 실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밀봉 후 봉투 접합부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봉투표지에 아래 전기분야 표기, 대상사업 명, 감리회사명 표기

아 래

분야	접수번호
전기	

3)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I.총괄표 + II.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본 공고상의 양식에 맞추어 제출할 것)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5). 감리배치계획표 1부 - 별첨양식 작성·제출

6). 감리업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1)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4) 업무중첩도 관련 감리지정권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 (해당하는 경우)- 상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 감리원 「 응모자격제한시점」 참조

5)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6)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작성 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7) 서약서

8)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9) 그밖에 평가서류(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뒷면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등)

※ 제출서류는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여 제출 할 것.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 기한내 제출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10)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 업무수행실적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참여분야와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 ㉔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하여는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 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함.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 합니다.

라)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방법

- ㉕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되, 총 9개소 이하로 함.
 - ※ 합산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 ㉖ PQ평가시 전기 상주감리원(책임,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분야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㉗ 타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격처리
- ㉘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합산
- ㉙ PQ입찰 서류 제출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 하고 허위 기재시 탈락처리함

마)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참여감리원 란에는 비평가감리원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을 시 실격 처리함[비평가는 보조감리원(비평가)로 표시]

바) 상기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해당업체에 한함)

사) 상기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 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준수)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공고문에 의거 평가대상 제외 되는 경우 : 실격

아) [별첨 1] 감리원 업무수행실적, [별첨 2]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대하여는 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에 있는 경력·실적 중 인정받고자 하는 경력·실적에 대하여 기록하시고, [별첨 1, 2]양식에 따라 감리업자가 작성한 실적에 대하여만 자기평가서와 비교하여 평가하며, 작성자의 실수로 [별첨 1, 2]양식에서 누락된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서류는 상기순번에 따라 상철하고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감리업자선정신청서, 자기평가서, 참여감리원(비평가, 신규 포함)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 발행본 복사)을 열람용으로 복사하여 별도 제출 요망.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

- 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1(2009.3.23)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동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나. 낙찰자결정 및 감리업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 ⇒ 입찰서개봉 및 발표 ⇒ 예정가격 추첨 ⇒ 예정가격 평균가 발표 ⇒ 순위(예비1~5순위)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상위 5위업체 추가서류제출)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결격여부 등 조회) ⇒ 감리자지정 통보

다. 상위 5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라.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업자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제10조의3제4항,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 하며, 제10조의3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마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바 만약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11.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등

가.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자는 제외)

나.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건 이상 응모한 경우 및 동일 응모번호에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다.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입찰금액이 아라비아 숫자금액과 한글 표기 금액이 다른 경우 포함)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라.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와 서류접수 등록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한 경우도 포함 : 사용인감계 제출 시에는 제외)
- 마. 담합 또는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12. 기타사항

- 가.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나. 응모서류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합니다.
-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 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교육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마. 8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 한하여 지역 가점 가산(1.5)을 합니다.
- 바.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 및 감리업자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 자로 감리업자를 선정하며 부정행위 감리업자는 부정행위 일부터 1년간 5점을 감점함.
- 사. 감리비입찰서는 비밀유지를 위해 이중봉투로 밀봉하고, 접합부에 반드시 인감 날인하고 봉투표지에 응모번호, 사업주체, 감리자 상호를 기재한다.
- 아.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단, 별첨 1, 2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 자.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 차. 감리자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함.
- 카.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 합니다.
- 타.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 파.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 하. **제출된 응모서류는 교환 또는 수정할 수 없고**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2일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합니다.(단, 감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거.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 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II.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제 출					미제출	구 분		제 출					미제출				
		적 합		부 적 합						적 합		부 적 합							
수행계획		수	우	미	양	가	0	작업기법		수	우	미	양	가	0				
점 수		3	2.7	2.4	2.1	1.8			점 수		2	1.8	1.6	1.4		1.2			
평 가 기 준	내 용	수행계획		적 합		부 적 합			-	평 가 기 준	내 용	문 제 점 조치사항 대책방안		적 합		부 적 합			-
		배치계획		적 합		부 적 합			-			쪽 수		3쪽 내외	2쪽 미만	-			-
	쪽 수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 ※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51호(2009. 3.23))에 따릅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담당자[김승민: 032)560-4732]에게 문의 바랍니다.

분 야	접수번호
전 기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 선정 신청

(사업명 : 당하동 15블록 APT건립공사)

2010년 월 일

(회사명 기재)

(뒤쪽)

<p>■ 첨부서류</p> <p>1. 자기평가서 1부.</p> <p>2. 감리비 입찰서 1부.</p> <p>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p> <p>■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p>		
감리 업자	①유사용역 수행실적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행정제재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재무상태 건 실 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기술개발 및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작업계획및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⑥교체빈도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지 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감리원	①등급/책임감리원 가점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 확인서
	②경 력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행정제재	감리원경력확인서
	④업무중첩도 · 교체 빈도 · 부실벌점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확인서
	⑤교육실적	감리원경력확인서
<p>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p>		

[별지 제8호 서식]

감리비 입찰서			
입찰 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 자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p>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입찰자 (인)</p> <p>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 회전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A÷B (%)	기술개발투자실적 (전기부문)		총매출액 (전기부문)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3차년	
		2차년		2차년	
		1차년		1차년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p>※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p>					

[별지 참고서식]

감리원 배치 계획표

용역명 : 인천광역시 당하지구 15블록 9-18,20로트 공동주택 신축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
 전기공사기간 : 200 . . ~ 200 . . (개월간)

구분	성명	등급	투 입 일 자																																								개월	비고 (배치기간)																																				
			2010										2011										2012										2013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채임	○ ○ ○	특급																																																																														
보조	○ ○ ○																																																																															
비상주	○ ○ ○																																																																															

※ 위 표는 감리원별 배치기간 작성예시로서 책임, 보조,비상주 배치인원은 관계규정에 따라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정 상태 건실도	(1) 자본 비율	(1.0)			
	(2) 유동 비율	(2.0)			
	산출근거		(1) 자본비율 :		
			(2) 유동비율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가. 개발 실적	-	(4)			
나. 기술개 발투자 실적	-	(4)			
다. 교육 실적	-	(2)			
산출근거			가. 개발실적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다. 교육실적	- 2주이상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점	
				- 1주이상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점	
5. 업무중첩도		[10]			
가. 상주 감리원	-	(6)			
나. 비상주 감리원	-	(4)			
산출근거			가. 상주감리원 :		
			나. 비상주감리원 :		
6. 교체빈도		[5]			
가. 감리 업체	-	(2.5)			
나. 참여 감리원	-	(2.5)			
산출근거			가. 감리업체 :		
			나. 참여감리원 :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업수 행계획	-	(3)			
나. 작업 기법	-	(2)			
산출근거			가. 과업수행계획 :		
			나. 작업기법 :		

8. 가정 및 감점		[2.5] [-5]			
가.가점	(1) 지역	(1.5)			
	(2)책임감리원	(1)			
	산출근거		(1) 지역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나. 감점	부실벌점	(-5)			
	산출근거		○ 부실벌점 :		

[별첨 1]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 아래 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구분	경 력 사 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책 임 감 리 원							
	[부표 3-1] 가목+나목+다목 소계				일 년		
	[부표 3-1] 라목 소계				일 년		
	합 계				일 년		

구분	경 력 사 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보 조 감 리 원							
		합 계				일 년	

구분	경 력 사 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수 일 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비 상 주 감 리 원							
	[부표 3-1] 가목+나목+다목 소계				일 년		
	[부표 3-1] 라목 소계				일 년		
	합 계				일 년		

[별첨 2]

○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 아래 실적만 인정 받고자 합니다.

구분	용역명	감리 기간	공사 기간	연면적(㎡)		적용요율(%)		환산 연면적 (㎡)	평가
				주거시설	주거시설외	환산비율 (감리수행기간/ 전체감리기간)	이행비율 (도급비율)		
합 계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감리업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 호
 사 업 명 :
 사업주체 :

본 업체는 귀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공고한 위 사업에 대하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오며 본 신청서의 허위 기재 및 부실(착오, 오기)한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감리업자 선정 취소 및 행정처분 등 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0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FAX 번 호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